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1. 법령명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국립전파연구원)	
2. 제·개정 주요내용	신설·강화 규제 해당	해당없음
	신설·강화 규제 미해당	<p>가. 적합성평가기준별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재배열(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관계자 등이 적합성평가기준 및 기기부호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1, 2, 3 및 7 일부를 별표1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재배열 <p>나.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제20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 및 완구용 모터를 장착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생략하도록 개선 <p>다. 일부 대상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별표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해당되는 23종의 무선기자재와 방송 공동수신설비 등 18종의 유선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p>라. 일부 대상기자재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별표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기기류, 기타 조명기구 2종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p>다.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 추가(별표1 제7호 다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5호) 제15조3 신설에 따라 기존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카메라)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하여 추가 <p>바.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관련 규제 완화(별표5 제2호 라목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수입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병행수입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통관시 제품 표면에 부착할 적합성평가 표시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품 표면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행정조사 포함여부	○ 미포함
3. 입법(행정)예고 기간		'19. 5. 13. ~ '19. 7. 12. (60일간)
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기타 참고사항		○ 제조자 등이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 적용 기술기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
6. 소관부처 및 담당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방송통신사무관 채성철(061-338-4710)

현 행	개 정 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p>제3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p> <p>① 영 제7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는 <u>별표 1과 같다.</u></p> <p>② 영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이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는 <u>별표 2와 같다.</u></p>	<p>제3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p> <p><u>별표1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7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적합 인증 대상기자재 2. 영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이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 3.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등록 (이하 '자기시험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 <p>② <삭 제></p>	<p><규제심사 비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등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별표 1, 2, 3 및 7 일부를 별표1로 통합하고 적합성평가기준별로 재분류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p><u>③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자기시험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는 별표 3과 같다.</u></p>	<p><u>③ <삭제></u></p>	
<p>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 ① <생략></p> <p>②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별로 적용되는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은 <u>별표 1에서부터 별표 3</u>에 표시된 바를 따른다.</p> <p>③ <생략></p>	<p>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별로 적용되는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은 <u>별표 1</u>에 표시된 바를 따른다.</p> <p>③ <현행과 같음></p>	<p><규제심사 비대상></p> <p>○ 제3조 개정에 따라 별표 2, 3 삭제 수정, 규제심사 비대상</p>
<p>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① <u>제3조 제1항</u>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① <u>제3조 제1호</u>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④ <현행과 같음></p>	<p><규제심사 비대상></p> <p>○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 규제심사 비대상</p>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p>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u>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u>은 별표 7과 같다.</p> <p>⑥ ~ ⑧ <생략></p>	<p>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u>형식기호 표시방법</u>은 별표 7과 같다.</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p>제8조(적합등록의 신청 등) ① <u>제3조 제2항 및 제3항</u>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제3조제2항</u>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 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하여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받아 신청</p>	<p>제8조(적합등록의 신청 등) ① <u>제3조 제2호 및 제3호</u>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제3조제2호</u>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 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하여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받아 신청</p>	<p><규제심사 비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 규제심사 비대상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p>할 수 있다.</p> <p>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u>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u>은 별표 7과 같다.</p>	<p>할 수 있다.</p> <p>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u>형식기호 표시방법</u>은 별표 7과 같다.</p>	
<p>제10조(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 ① <생략></p> <p>1. <생략></p> <p>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u>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표 2와 별표 3의 대상기자재 중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적용한</u>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p> <p>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 성적서 가.~다. <생략></p>	<p>제10조(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u>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가목, 자목에 해당하는</u>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p> <p>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 성적서 가.~다. <현행과 같음></p>	<p><규제심사 비대상></p> <p>○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 규제심사 비대상</p>

현 행	개 정 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p>라. 자기 시험성적서 (<u>제3조제3항</u>의 대상기자재에 한한다)</p> <p>마. <생략></p> <p>바.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IECEE) CB Scheme에 따른 CB인증서(다만, <u>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라목</u>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국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p> <p>4.~5. <생략></p> <p>6. 회로도 : 다만, <u>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u>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 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u>있으며</u>, 적합성평가를 받은</p>	<p>라. 자기 시험성적서 (<u>제3조제3호</u>의 대상기자재에 한한다)</p> <p>마. <현행과 같음></p> <p>바.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IECEE) CB Scheme에 따른 CB인증서(다만, <u>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의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 [1)부터 32)까지 및 37])</u>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국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p> <p>4.~5. <현행과 같음></p> <p>6. 회로도 : 다만, <u>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합등록</u>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u>있다. 또한</u> 적합성평가를</p>	<p><규제심사 비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 규제심사 비대상 <p><규제심사 비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 규제심사 비대상 <p><규제심사 비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 규제심사 비대상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p><u>‘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u>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단, <u>별표 2 및 별표 3의 단말기기류는 비치서류</u>에 제5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회로도를 <u>포함하여</u> 비치한다.)</p> <p>7.~8. <생략> ② ~ ③ <생략></p>	<p>받은 <u>‘무선 송·수신용 부품’과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u> 경우에도 해당 부분의 <u>회로도</u>를 생략할 수 있다. (단, <u>별표 1의 제7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u>는 제5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회로도를 비치한다.)</p> <p>7.~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p><규제심사 비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등록자가 비치해야 할 서류 중 생략할 서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규제심사 비대상 - 적합성평가를 받은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구성품으로 장착한 경우
<p>제11조(잠정인증의 신청) ① <생략></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u>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u></p>	<p>제11조(잠정인증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u>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u></p>	<p><규제심사 비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 규제심사 비대상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p>제15조 (변경사항의 범위 등)</p> <p>① ~ ② <생략></p> <p>③ <생략></p> <p>1.~4. <생략></p> <p>5. 컴퓨터 내장 구성품(<u>별표 2 제6호 다목</u>)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체하는 경우</p> <p>④ <생략></p>	<p>제15조 (변경사항의 범위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5. 컴퓨터 내장 구성품[<u>별표 1 제11호 자목 35</u>]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체하는 경우</p> <p>④ <현행과 같음></p>	<p><규제심사 비대상></p> <p>○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 규제심사 비대상</p>
<p>제18조 (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생략></p> <p>1.~2. <생략></p> <p>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u>별표 2 제6호 다목</u>)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p>	<p>제18조 (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생략></p> <p>1.~2. <생략></p> <p>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u>별표 1 제11호 자목 35</u>]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p>	<p><규제심사 비대상></p> <p>○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 규제심사 비대상</p>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p>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① <u>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의 경우,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전자파흡수율 및 전자파강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하여야 한다.</u></p> <p><신설></p> <p><신설></p> <p>② ~ ④ <생략></p>	<p>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각 호의 구성품에 한해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전자파흡수율 및 전자파강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하여야 한다.</u></p> <p>1. <u>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u></p> <p>2. <u>적합성평가를 받은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장착한 기자재</u></p> <p>3. <u>적합성평가를 받은 ‘완구용 모터’를 장착한 완구제품(다만, 별도의 능동회로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u></p> <p>② ~ ④ <생략></p>	<p>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p> <p><규제심사 비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제출 등을 간소화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규제심사 비대상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규제 심사 비대상> ○ 제3조 개정에 따라 관련 대상 기자재를 <u>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재분류</u> ○ 종전 SAR을 전자파흡수율로 표시하였음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기기 부호		
					전자파 흡수율							
1.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	가. 무선전화경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가 동작하는 것	○	○				○			SA		
	나. 무선전화경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	○				○			SB		
	다.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	○				○			MR HR VR		
2. 무선방위 측정기	가. 의무 비치용	1)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			SN		
		2)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	○			○			SH		
		3) 검용무선방위 측정기	○	○			○			SV		
나. 임의 비치용	1)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			SRR T		
	2)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	○				○			SRAI S		
	3) 검용무선방위 측정기	○	○				○			NR		
3.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VA1		
4. 경보자동전화장치		○	○				○			VA2		
5.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 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가. 항공이동업무의 기기	○	○				○			VA3		
	나.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	○				○			S		
	다.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	○				○			T		
파. 무선전화 경보 자동수신기	1) 확성기 동작형	○	○				○			WA		
	2) 가청경보기 동작형	○	○				○			WB		
	3)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 동작형	○	○				○			WC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기기 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기기 부호	기타사항			
6.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가. 국제 항해용 레이더	1) 표시면의 유효직경 32cm 이상	○	○					○			RAL				
		2) 표시면의 유효직경 25cm 이상 32cm 미만	○	○					○			RAM				
		3) 표시면의 유효직경 18cm 이상 25cm 미만	○	○					○			RAS				
	나. 국내항해용 레이더	○	○					○			RC					
	다. 국내소형선박용 레이더	○	○					○			RD					
7.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			DA				
8.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			DB				
9.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			DC				
10. 디지털선택 호출 장치의 기기	가. 선박국용	○	○						○			DAA				
	나. 해안국용	○	○						○			DBB				
11.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						○			DCA				
12.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 호출 장치의 기기	가. MF·HF 송수신장치	○	○						○			B				
	나. VHF 송수신장치	○	○						○			AIS1				
13. 디지털선택 호출 전용수신기	가. MF 전용수신기	○	○						○			AIS2				
	나. MF·HF 전용수신기	○	○						○							
	다. VHF 전용수신기	○	○						○							
14. 네비텍스수신기		○	○						○							
15. 수색구조용 위치 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가. 수색구조용 레이더트랜스폰더	○	○						○			A				
	나.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	○	○						○			SSS				
대상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기기 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하.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1) 국제 항해용	가) 표시면의 유효직경 32cm 이상	○	○					○		RAL		
					나) 표시면의 유효직경 25cm 이상 32cm 미만	○	○					○			RAM	
					다) 표시면의 유효직경 18cm 이상 25cm 미만	○	○					○			RAS	
가. 무선방위 측정기				1) 의무비치용	가) 중파무선 방위 측정기	○	○					○		DA		
					나) 중단파무선 방위 측정기	○	○					○			DB	
					다) 검용무선 방위 측정기	○	○					○			DC	
나. 라디오부이의 기기				2) 임의비치용	가) 중파무선 방위 측정기	○	○					○		DAA		
					나) 중단파무선 방위 측정기	○	○					○			DBB	
					다) 검용무선 방위 측정기	○	○					○			DCA	
다. 자동 식별 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선박 자동 식별장치	○	○					○		AIS1			
				2) 항로표지용 자동 식별장치	○	○					○		AIS2			
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기기 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A		
나. 중단파대, 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링크 장치의 기기				○	○							○		SSS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규제 심사 비대상>
 ○ 제3조 개정에 따라 관련 대상 기자재를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재분류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적합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등록 시험기관	자기시험		
16.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의 기기	가.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나.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	○	○								SRG	
17. 자동 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선박 자동 식별장치 나. 항로표지용 자동 식별장치	○	○								SRA	
18.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일반업무용 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	○		○						RLS	
19.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의 기기			○								V1	
20. 라디오부이의 기기			○								SS	
21.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 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	○		○						SS	
22.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PMSE	
23.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V2	
2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IPN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IPN1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IPN4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IPN9	
	마. 기 타	○	○								IPN9	
2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IPN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IPN1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IPN4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IPN9	
	마. 기 타	○	○								IPN9	
26.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IPN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IPN1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IPN4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IPN9	
	마. 기 타	○	○								IPN9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	적합등록 시험기관	자기시험	기타 사항			
가.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일반업무용	○	○		○				SRG		
	2)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	○						SRA		
나.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RLS		
다.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V1		
라. 단축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업무의 기기)		○	○						SS		
마. 기상원 조용 무선설비	1) 라디오존데 기기		○						P1		
	2) 라디오로봇 기기		○						P2		
바. 무선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CA1		
사. 주파수공 용 통신용 무선설비 의 기기	1) 육상용	○	○		○				CCCA1		
	2) 해상용	○	○		○				CCCA2		
	3) 중계장치 및 이동 중계국 송수신기기	○	○						CCCA		
아.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PMSE		
자.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V2		
차.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V3		
카. 통합공공 망용 무선설비	1) 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IPN		
	2) 육상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IPN1		
	3) 핸드오프용 채널 변환 장치	○	○						IPN4		
	4) 기 타	○	○						IPN9		
타.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						MOB		
파. 지능형교통 시스템용 무선설비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	○						ITS1		
	2)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ITS2		

※ 비고
○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방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규제 심사 비대상>

○ 제3조 개정에 따라 관련 대상 기자재를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재분류

○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대상 기자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규제심사 비대상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2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MCA			
	나.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MCA1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MCA2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MCA4			
	마. 기 타	○	○									MCA9			
28. 900MHz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29.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30.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31.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가. 육상용	○	○		○										
	나. 해상용	○	○		○										
	다.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수신기기	○	○												
32.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33.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34.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HF대 기기	○	○												
	나. VHF/UHF대 기기 등														
35. 가압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2.3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나. 26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36.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37.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2.5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나. 25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38.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39.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												
40.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41.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가.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MCA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MCA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MCA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MCA4	
			5) 기타	○	○									MCA9	
		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PCS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PCS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PCS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PCS4	
			5) 기타	○	○									PCS9	
		다.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IMT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IMT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IMT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IMT4	
			5) 기타	○	○									IMT9	
		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LTE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LTE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LTE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LTE4			
5) 기타	○		○									LTE9			
마.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IOT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IOT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IOT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IOT4			
	5) 기타	○	○									IOT9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규제 심사 비대상>

○ 기존 이동통신용 무선설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합성 평가기준에 따라 분리하는 내용으로 규제심사 비대상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가.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			바.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28 GHz)	1) 육상이동구의 송수신장치	○	○			○	○		FCG1	
	나.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CG2	
	다.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	○				3) 기타	○	○				○		FCG3	
	라.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			사.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3.5 GHz)	1) 육상이동구의 송수신장치	○	○		○	○		FCG1		
	마.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	○		○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CG2	
	바. 중계용 무선기기	○	○				3) 기타	○	○				○		FCG3	
	사.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	○			아.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ERT		
	아.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		○	자.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CA2		
	자.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	○			차.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GMS		
	차. 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	○	○			카.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DATA		
	카.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	○	○			타.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용	○	○		○	○		CCA3		
							2) 해상용	○	○		○	○		CCA4		
					3)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수신기기		○	○				○		CCA5		
43. RFID / USN용 무선기기	가. RFID용 무선기기	○	○		○	파.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MCP			
	나. USN용 무선기기					○	○		○		○		WERO			
44.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	400M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LBS			
45.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가. 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너.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2.3GHz 주파수대역	○	○			○		WLL1		
	2) 26GHz 주파수대역						○	○			○		WLL2			
	다. 5.8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비고 ○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방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규제 심사 비대상>

○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는 제3호<전기통신사업용> 및 제4호<간이무선국 등> 기준에 공통 적용되어 기준에 따라 분리한 내용으로 규제심사 비대상

현 행						개 정 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성평가 유형	적합등록	기기 부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시험기관	적합등록	적합등록	적합등록	적합등록	적합등록	적합등록	적합등록	적합등록	적합등록	적합등록	적합등록	적합등록	적합등록	적합등록
46. 코드없는 전화기	가. 1.7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나. 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																	
47. UWB 및 용도미정 기기	가.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나. 용도미정 기기	○	○																						
48. 단말기기류	가. 무선 모뎀	○	○	○																					
	나. 비상통보기기 (화재 가스, 침입 경보기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		○																					
	다.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	○	○																					
	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 (IPTV 셋톱박스 등)	○		○																					
	마.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	○		○																					
	바. 수동형 관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EPON, GPON, 광모뎀 등)	○		○																					
	사. 이와 유사한 단말기기류	○		○																					
	49. 시스템류	가. 전화교환기(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	○		○																				
나. 데이터교환기		○		○																					
다.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MDN교환기 포함)		○		○																					
라. 구내교환기(PBX)		○		○																					
마. ATM교환기		○		○																					
바. 키폰시스템		○		○																					
사.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 시스템		○		○																					
아. 자동음성처리시스템(카드식 포함)		○		○																					
자. 전자사서함시스템(카드식 포함)		○		○																					
차. 자동착신방식(DID) 기능이 있는 멀티 미디어 서버		○		○																					
가.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CB	
		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LPD	
	다.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																				IMD		
	라. 특성소출력 무선기기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																				LARN1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																				LARN2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	○																				LARN3	
		4) 음성 및 음성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																				LARN4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	○		○																		LARN5	
		6) 중계용 무선기기	○	○																				LARN6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	○																				LARN7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		○																			LARN8
		9) 이동체삭멸용 무선기기	○	○																					LARN9
10) 소형가정용 무선기기		○	○																					FTC	
11)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		○	○																					RDR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	○																					ITS3 10mW/MHz 이하의 기기만 해당		
마. RFID용 무선기기	1) 900MHz 주파수 대역	○	○		○																			RFID1	
	2) 433MHz 주파수 대역	○	○																					RFID2	
	3) 1356MHz 주파수 대역	○	○																					RFID3	
바. USN용 무선기기	1) 917MHz ~ 923.5MHz 주파수 대역	○	○																					USN1	
	2) 940.1MHz ~ 946.3MHz 주파수 대역	○	○																					USN2	
	3) 1.7GHz 주파수 대역	○	○																					USN3	
사. 코드없는 전화기	1) 1.7GHz 주파수 대역	○	○	○	○																			DCP17	
	2) 2.4GHz 주파수 대역	○	○	○	○																			DCP24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규제 심사 비대상>

○ 일부 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규제심사 비대상

○ 제3호<간이무선국 등>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기자재에서 10mW/MHz 이하의 기기는 제5호<비신고기기>로 분류하는 등 대상기자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내용으로 규제심사 비대상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50. 회선종단 장치류	카.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		○								○		UWB1			
	타. 방송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		○								○		FACS2			
	파.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	○		○								○		FACS3			
	가.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		○								○		FACS1			
	나.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 통신장치	○		○								○		FACS4			
	다.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	○		○								○		FACS5			
	라.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	○		○								○		MICS4			
	마.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		○								○		SRD5			
	바. 근거리(LAN), 원거리(WAN) 전송장치 (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함)	○		○								○		SRD10			
	사. PCM단국장치	○		○								○		SRD24			
아.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 장치류	○		○								○		TWWS1				
51.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류	가. 진폭변조기	○		○								○		TWWS2			
	나. 주파수변조기	○		○								○		TLPR			
	다. 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	○		○								○		LPR			
	라.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방식, 디지털방식, 디지털 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	○		○								○					
	마.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		○								○					
대상기자재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아.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									○		UWB1			
자.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1) 262MHz ~ 264MHz 주파수 대역	○	○									○		FACS2			
	2) 22GHz ~ 23.6GHz 주파수 대역	○	○									○		FACS3			
	3) 57GHz ~ 66GHz 주파수 대역	○	○									○		FACS1			
	4) 122GHz ~ 123GHz 주파수 대역	○	○									○		FACS4			
	5) 244GHz ~ 246GHz 주파수 대역	○	○									○		FACS5			
차.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		○	○								○			MICS4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1) 5.8GHz 주파수 대역	○	○									○		SRD5			
	2) 10GHz 주파수 대역	○	○									○		SRD10			
	3) 24GHz 주파수 대역	○	○									○		SRD24			
타. TVWS 대역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고정형 기기	○	○									○		TWWS1			
	2) 이동형 기기	○	○									○		TWWS2			
파. 레벨측정 레이더용 무선기기	1)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	○									○		TLPR			
	2) 76~81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 레이더	○	○									○		LPR			
<p>※ 비고</p> <p>1. 라목 2), 8), 마목의 기자재 중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의 경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p> <p>2. 제1호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의 포장 또는 사용자 설명서 일면에 다음의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해당 제품은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로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입니다.</p> </div> <p>3.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방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p> <p>4. 라목 5), 8)의 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p>																	
<p>○ 전자파흡수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규제심사비대상</p>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52. 방송공동 수신 설비류	가. 증폭기	○		○									
	나. 레벨조정기	○		○								H	
	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	○		○									
	라. 광증폭기	○		○									
	마.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		○									
	바.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DtoA)	○		○									
	사.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		○									
	아. 아날로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		○									
	자. 에프엠라디오방송 신호처리기	○		○									
차.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수신설비류	○		○										
53. 통합공공 망용 무선설비	가. 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 육상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다.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라. 기 타	○	○										
54.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										
55. 지능교통 시스템용 무선설비	가.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	○										
	나.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56.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고정형 기기	○	○						○			B15	
	나. 이동형 기기	○	○						○			B21	
57. 레벨측정 레이더용 무선기기	가.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		○					○			B41	
	나.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	○		○					○			B42	
6. 기타 무선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기기 부호	기타 사항		
가.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				
나.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 HF대 기기	○	○						○			HAM1	
	2) VHF/UHF대 기기등	○	○						○			HAM2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기기 부호	기타 사항		
가. 시스템류	1) 전화교환기(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	○		○					○				
	2) 데이터교환기	○		○					○			B12	
	3)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ISDN교환기 포함)	○		○					○			B13	
	4) 구내교환기(PBX)	○		○					○			B14	
	5) ATM교환기	○		○					○			B15	
	6) 키폰시스템	○		○					○			B21	
	7)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	○		○					○			B31	
	8) 자동음성처리 시스템(카드식 포함)	○		○					○			B41	
	9) 전자사서함시스템(카드식 포함)	○		○					○			B42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규제 심사 비대상>

○ 일부 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규제심사 비대상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기기 부호	기타 사항																					
58.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GHz 대역)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B43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B51																						
	다. 기 타	○	○							B52																						
59.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GHz 대역)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LOW21																						
	다. 기 타	○	○						○	LOW22																						
※ 비 고																																
1. 제42호 나목 및 아목, 제43호, 제45호의 기자재 중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의 경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의 포장 또는 사용자 설명서 일면에 다음의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은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로서 전과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입니다.																																
		나. 회선종단장치류																														
		10) 자동착신방식(DID) 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	○						○		B43											
		11)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	○							○		B51										
		12) 방송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	○								○		B52									
		13) 유선 통신 시스템 부속 물류										○	○								○		LOW21									
		가)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 장치										○	○								○		LOW22									
		나) 시스템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	○								○		LOW22									
		14)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										○	○										○		B99							
		1)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	○											○		C11						
		2)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통신장치										○	○													○		C12				
		3)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										○	○														○		C13			
		4)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										○	○														○		C14			
		5)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	○															○		C21		
		6) 근거리(LAN), 원거리(WAN) 전송장치(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함)										○	○															○		C31		
		7) PCM단국장치										○	○																○		C41	
		8)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										○	○																○		C99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규제 심사 비대상>
 ○ 일부 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규제심사 비대상

현 행 개 정 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2항 관련)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SAR 강도
1.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 바목에 따른 기기와 동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파이용설비는 제외)	가. 산업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나. 과학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다. 의료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라. 가정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2.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 라목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	가. 자동차 기기류	○			
	나.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다.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자동차 전장품)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흡수율	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다. 단말 기기류	1) 비상통보기기 (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		○			○		A43	
	2) 광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EPON, GPON, 광모뎀 등)	○		○			○		A84	
	3)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		○			○		A44	
	4) 전화기(헤드셋 전화기 포함)	○		○			○		A11	
	5) 다기능 전화기 (시계, 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 전화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		○			○		A12	
	6)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 커넥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 자동 전화발신제어기, 착신선환기 자동응답기 등)	○		○			○		A13	
	7)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		○			○		A15	
	8) 영상전화기	○		○			○		A16	
	9)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 (휴오도 메이킹 비디오도어폰 등)	○		○			○		A17	
	10)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			○		A20	
	11) 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 (카드식 포함)	○		○			○		A21	
	12) 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카드식 포함)	○		○			○		A22	
	13) 팩시밀리 모뎀 (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		○			○		A23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인체보호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3.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류 : 9kHz 부터 400GHz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 ※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가. 텔레비전수상기	○												
	나. 영상모니터	○												
	다.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												
	라. 비디오카메라	○												
	마. 튜너	○												
	바. 편집기	○												
	사. 디스크플레이어	○												
	아. 라디오수신기	○												
	자. 앰프	○												
		1) 앰프												
		2) 앰프강령스피커												
	차. 리시버	○												
	카. 음성기록계	○												
	타. 음성플레이어	○												
	파. 오디오시스템	○												
	하. 전자악기	○												
	거. 위성방송수신기	○												
	너. 비디오게임기구	○												
	더. 비디오폰	○												
	러. TV영상프로젝터	○												
	머. 음질조절기	○												
		1) 음질조절기												
		2) 이퀄라이저												
	버. 오디오프로세서	○												
	서. 신호변환장치(AD/DA)	○												
	어. 음성 및 영상분배기	○												
	저. 콤프레서 게이트	○												
	차. 전자시계	○												
	키. CCTV 카메라	○												
	터. 영상전송기	○												
	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허. 영상기록계	○												
	고. A/V 신호수신기	○												
노. 영상프로세서	○													
도. 오디오 및 비디오 확습기	○													
로. 턴테이블	○													
모.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													
	14) 근거리데이터채널 모뎀 (원격통신용, LADC)	○		○						○		A24		
	15)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						○		A32		
	16)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		○						○		A33		
	17)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		○						○		A34		
	18)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		○						○		A35		
	19) 코덱	○		○						○		A36		
	20) 다기능보조기기 (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 방식 기기)	○		○						○		A41		
	21) 야널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 보호기기	○		○						○		A42		
	22) 원격제어기기	○		○						○		A45		
	23)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		○						○		A51		
	24) 회선장애 감시기기	○		○						○		A52		
	25) 디지털가입자회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 모뎀 등)	○		○						○		A81		
	26)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한 인터넷 전화기, 라우터 등)	○		○						○		A82		
	27)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케이블모뎀 등)	○		○						○		A86		
	28) 공중전화기	○		○							○	A18		
	29) ISDN 망종단기기 (NTE)	○		○							○	A61		

현 행 **개 정 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강도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 ※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메트, 전기톱질기, 안전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가. 전기청소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kW 이하인 것에 한함)	1) 진공청소기·물흡입청소기	○					
		2) 전기바다청소기						
		3) 전기표면세척기						
		4) 스팀청소기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1) 전기건조다리미	○					
		2) 스팀다리미						
		3) 바지 프레스기						
		4) 주름펴기						
		5) 다림질 프레스						
	다.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	1) 전기식기세척기	○					
		2) 전기식기건조기						
	라. 주방용전열기구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IH) 방식 제품에만 적용)	1) 전기레인지	○					
2) 전기오븐기기								
3) 전기겨치식그릴								
4) 전기호브								
5) 전기큰로								
6) 전기가열기								
7) 전기토스터								
8) 전기프라이팬								
9) 전기휴대형그릴								
10) 전기과자구이								
11) 와플기기								
12) 핫플레이트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30) ISDN 단말기기 (ISDN 전화기, 터미널 어댑터, 인터페이스 카드 등)	○		○						○	A62	
31) ISDN 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N 복합단말기기, G4 팩시밀리, ISDN 라우터 등)	○		○						○	A63	
32) 접속 커넥터			○						○	ICW11	
33)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		○					○		A90	
34)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		○					○		A99	

8. 유선방송국 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 장치류	1) 진폭변조기	○		○				○		D11	
	2) 주파수변조기	○		○				○		D12	
	3) 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	○		○				○		D13	
	4) 텔레비전 신호 처리기 (아날로그 방식, 디지털 방식, 디지털 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	○		○				○		D14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		○				○		D88	
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	○		○					○		A85	

<규제 심사 비대상>

○ 현행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인 비디오카메라(별표2 제3호 리목) 등에서 사생활 침해방지용 초기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는 단말장치 기준고시 제15조3 신설(2018.8.7.)에 따라 IP기반의 카메라를 ‘인터넷 프로토콜기반의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명칭으로 분리한 사항임 (규제심사결과 제2018-304호)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자. 전기액체가 열기기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ED)방식 제품에만 적용)	1) 전기밥솥	○												○	
	2) 전기보온밥솥														
	3) 전기주전자														
	4) 전기냄비														
	5) 전기물끓이기														
	6) 전기약탕기														
	7) 커피메이커														
	8) 전기스팀쿠커														
	9) 달걀조리기														
	10) 우유가열기														
	11) 컷병가열기														
	12) 요구르트제조기														
	13)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														
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자파강도는 직류 전원 사용 제품은 제외)	1) 전기방식	○													
	2) 전기요														
	3) 전기매트														
	4) 전기카펫														
	5) 전기장판														
	6) 전기침대														
카. 전기찜질기	○														
타. 발 보온기	1) 발보온기	○													
	2) 전기손난로														
파. 전기온수기	1) 전기온수기 (끓는 점 이하의 완료 유효는 것)	○													
	2) 순간온수기														
하. 전기냉장·냉동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	1) 전기냉장·냉동기기	○													
	2) 제빙기														
	3) 아이스크림 프리저														
	4) 전기냉수기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IPTV 셋톱박스 등)	○		○			○			A83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가. 증폭기	○		○				○		D21		
나. 레벨조정기	○		○				○		D31		
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	○		○				○		D33		
라. 광 증폭기	○		○				○		D34		
마. 신호처리기	○		○				○		D32		
바. 분기기			○					○	LOW2		
사. 분배기			○					○	LOW3		
아. 동축케이블			○					○	LOW4		
자. 보호기			○					○	LOW5		
차. 가입자보호기(CATV)			○					○	LOW6		
카. 광분배기			○					○	LOW7		
타. 광케이블			○					○	LOW8		
파. 직렬단자			○					○	LOW9		
하.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수신설비류	○		○				○		D99		

<규제 심사 비대상>

○ 현행 별표1 제52호 마~자목을 통합한 내용으로 규제심사 비대상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규제 심사 비대상>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기타 사항		
마.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1) 전기세탁기 (의류, 옷감 세탁용으로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kW 이하인 것)	○												○		ISM1	○ 제3조 개정에 따라 관련 대상 기자재를 <u>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재분류</u>	
	2) 전기탈수기 (드럼속도 50m/s 이하인 것)																	
바. 모발관리기	1) 모발건조기	○																
	2) 전기머리인두																	
	3) 모발말개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1) 전기보온기	○																
	2) 전기주운기																	
	3) 전기온장고																	
아. 주방용전동기기	1) 주서	○																
	2) 주서믹서기																	
	3) 후드믹서																	
	4) 전기녹즙기																	
	5) 크림거품기																	
	6) 계란반죽기																	
	7) 혼합기																	
	8) 버터제조기																	
	9) 압즙기																	
	10) 슬라이스기																	
	11) 전기칼갈이																	
	12) 전기강통따개																	
	13) 전기칼																	
	14) 커피분쇄기																	
	15) 방삭기																	
	16) 전기고기갈개																	
	17) 잔가죽수제조기																	
	18) 전기육절기																	
	19) 전기골절기																	
	20)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함)																	
가. 산업·과학·의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고주파 기기류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전파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파용 설비는 제외)															
															가. 산업·과학·의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고주파 기기류	○		
나.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자동차관리법」에서 구분한 이륜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															
															나.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1) 자동차 기기류
나.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2)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 (자동차전장품)	○														
															나.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3) 전자식 운행기록계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종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거. 전자레인지 (300MHz~3GHz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kW를 초과하는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너. 가정용 전동세탁기	○													
더. 전기충전기 (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	○													
러. 전기건조기	1) 회전형 전기건조기	○												
	2) 손건조기													
	3) 전기건조기													
머. 전열기구	1) 전기스토브	○												
	2) 전열보드													
	3) 전기라디에이터													
	4) 전기온풍기													
	5) 축열식 전기 난방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버. 전기맛사지기	○													
서. 냉방기 및 제습기 (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	1) 냉방기	○												
	2) 제습기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IH)방식 제품에만 적용
어. 유체펌프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1) 유체펌프	○												세탁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과 전기탈수기 드럼속도가 50%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2) 전기온수펌프													
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p>※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외</p> <p>1) 방폭형인 것</p> <p>2) 전기메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차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 반신욕조 및 욕조 중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p>													
1)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티밍청소기)	○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전기건조다리미, 스티밍다리미, 바지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													
3) 전기식기세척기 및 전기식기건조기	○													
4) 주방용전열기구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전기그릴, 전기호브, 전기콘로, 전기가열기, 전기토스터, 전기프라이팬, 전기고기구이, 와플기, 핫플레이트)	○													
5)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6) 모발관리기 (모발건조기, 전기머리인두, 모발발개)	○													
7)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전기주온기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규제 심사 비대상>

○ 현행 별표3 제12호 나목의 내용을 개별적 기기에 반영한 사항으로 규제심사 비대상

현 행						개 정 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저. <삭 제>																
저. 사우나기기	1) 전기스팀 사우나기기	○							○	KIC11	전동기 정격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 등록 대상					
	2) 전기사우나기기															
	3) 사우나기기 용 전열기															
	4) 스팀사우나 용 전열기															
커. <삭 제>																
터. <삭 제>																
피. <삭 제>																
허. 전기욕조	1) 소용들이 욕조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욕조 기포 발생기 포함)	○														
	2) 반신(전선)욕조															
	3) 발욕조															
고. 공기청정기 (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														
노. 자동관매기		○														
도. 팬 레인지후드 (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	1) 선풍기	○														
	2) 송풍기															
	3) 환풍기															
	4) 레인지후드															
	5) 전기냉풍기															
로. 화장실용 전기기기	1)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														
	2) 전기변좌															
	3) 오물흡입기															
8) 주방용 전동기기 (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 제조기, 압착기, 슬라이스기 전기칼칼리,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 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및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														
9) 전가열 가열기기 (전기밥솥, 전기보온밥솥,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커피메이커, 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우유가열기, 젓병가열기, 요쿠르트 제조기, 증기조리기 등 기타 전기액체 가열기기)		○							○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IH)방식 제품에만 적용					
10)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기방석,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요 포함)		○							○	MAT11	전자파강도는 직류 전원 사용제품은 제외					
11) 전기찜질기		○								○	SIW11					
12) 발 보온기 및 전기손난로		○								○	WRM2					
13) 전기온수기 (끓는점 이하의)		○								○	FOT11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 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시험			
모. 가습기		○														
보. <삭 제>																
소. <삭 제>																
오.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중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									○	COLL1	전 동 기 의 정격 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조. <삭 제>																
초. <삭 제>																
코. <삭 제>											○	RAM1				
토. <삭 제>																
포. <삭 제>																
호. 전기용해기	1) 왁스용해기 2) 초코렛용해기 3) 파라핀용해기	○									○	SEM1				
구. <삭 제>																
누. 이미용기	1) 전기머리손질기	○														
	2) 두피모발기															
	3) 샴푸기															
	4) 모발가습기															
	5) 손톱정리기															
	6) 전기면도기															
	7) 전기이발기															
	8) 안면사우나기															
두. <삭 제>																
루. <삭 제>																
두. <삭 제>																
루. <삭 제>																
무.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1)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2)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	SCD1				
부.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1) 전기이발용의자	○														
	2) 전동침대															
	3) 전기온열의자															
온도로 유지하는 것) 및 전기순간온수기																
14) 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가량수기 포함)		○									○					
15) 전자레인지 (300MHz ~ 30GHz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한함)		○									○					
16) 가정용 전동 재봉기		○									○					
17) 전기충전기		○									○	CHG1	출력 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18) 전기건조기 (회전형 전기 건조기, 손건조기 포함)		○									○	HRY1				
19) 전열기구 (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온풍기, 전가량방기)		○									○	SIV1				
20) 전기맛사지기		○									○	MSG1				
21) 냉방기 및 제습기 (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에 한함)		○									○	SCD1				
22)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를 포함) * 진공펌프, 오		○									○	PUM1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수. <삭 제>																	
우. 전기온수메트	1) 전기보일러	○				○									가90℃ 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이 외의 기기는 자기시험적합 등록 대상		
	2) 전기온수메트 및 전기온수 칩대																
주. 구강청결기	1) 전동칫솔	○				○								SNU1			
	2) 구강세척기																
추. <삭 제>																	
쿠. <삭 제>																	
투. 해충퇴치기	1) 해충퇴치기	○				○								BIH1			
	2) 전기포충기																
푸. 전기집진기		○															
후. 착유기		○															
그. 서비스기기	1) 전기광택기	○				○								AIR11	정격입력이 50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 등록 대상		
	2) 수하물보관기																
	3) 지폐교환기																
	4) 동전교환기																
느. 전기에어커튼		○															
드.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르. 폐열 회수 환기장치		○															
므. 게임기구	1) 레이저사격기기	○				○								FAN11	정격입력이 50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2) 운전시뮬레이션 게임기구																
	3) 인형뽑기																
	4) 다트판																
	5) 농구게임기																
	6) 기타 게임기기																
브. 전동형 물스크린		○															
스. 전기훈증기	1) 전기훈증살충기	○				○								DIS11			
	2) 전기방향확산기																
대상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일펌프, 샌드 펌프 및 기계 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23) 전기사우나기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및 사우나용 전열기 포함)		○										○		SNU1			
24) 전기욕조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욕조기 포함)		○										○		BIH1			
25) 공기청정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AIR11	정격입력이 50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 등록 대상		
26) 자동판매기		○										○		MNI1			
27) 팬, 레인지후드 (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전기냉풍기) *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FAN11	정격입력이 50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28) 화장실용 전기기기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										○		BIH21			
29) 가습기		○										○		MSI11			
30)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중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제조·수입·판매		○										○		DIS11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오. <삭 제> 즈. 보플제거기 츠. 산소이온발생기 크. 전기정수기 1) 전기정수기 2) 전기이온수기 트. 초음파세척기 1) 초음파세척기 2) 파일야제세척기 프. <삭 제> 호. <삭 제> 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니. 전동공구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함) 1) 전기드릴 2) 전기드라이버 3) 전기그라인다 4) 포리서 5) 전기샌더 6) 전기원형톱 7) 전기톱머 8) 전기금속가위 9) 전기테이퍼 10) 전기왕복톱 11) 전기진동기 12) 전기체인톱 13) 전기대패 14) 전기잔디깎기 15) 전기못출 16)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17)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디.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1) 전동자전거 2) 전동보드 3) 전동휠체어 4) 전동스쿠터 5)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												
	○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5.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 9kHz부터 400k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가. 일반 조명기구	1) 형광등기구	○																
		2) PLS조명기구																	
		3) 백열등기구·전기스텐드																	
		4) LED등기구																	
		5) 할로겐등기구 (150W 이하의 것)																	
		6) 고압방전등기구 (150W 이하의 것)																	
		7) 투광조명기구 (150W 이하의 것)																	
	나.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1)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정격입력이 1kW 이하의 것)	○																
		2)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정격입력이 1kW 이하의 것)																	
		3) 네온변압기																	
4)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 전원공급 장치 포함)																			
다. 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 포함)		○																	
라. 기타 조명기구	1) 크라이믹스 튜리용 조명기구	○																	
	2) 충전식휴대전등																		
	3) LED 모듈 (램프)																		
44) 게임기구 (레이저사격기, 운전시뮬레이션 게임기구, 인형 뽑기, 다트판, 농구게임기 및 기타 게임기구)		○																	
45) 전동형 롤스크린		○																	
46) 전기훈증기 (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																	
47) 보플제거기		○																	
48) 산소이온발생기		○																	
49) 전기청수기 (전기이온수기 포함)		○																	
50) 초음파세척기 (과일야채세척기 포함)		○																	
51) 전동공구 (전기드릴, 전기드릴, 전기그라인더, 포리셔, 전기샌더, 전기톱, 전기톱, 전기톱머, 전기금속가위, 전기테이퍼, 전기전동기, 전기대패, 전기잔디깎기, 전기못총, 트리밍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전동공구)		○																	정격입력이 1.5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 대상
52)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전동자전거, 전동보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6. 정보·사무 기기류 :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기기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기기	가. 컴퓨터류	○												
	나. 컴퓨터 주변기기류	○										○	WDMI	
	다.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										○	AQUI	
	라. 사무기기류	○										○	BDI1	
	마. 기타 정보·사무 기기류	○										○	MSI1	
												○	ROL1	
												○	KCN1	
												○	FOL1	
												○	ELD1	
												○	WAT2	
												○	COM1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7. 디지털 장치류 :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기	○											○	WPI1				
8. 전선로에 주파수가 9㎓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파이용설비는 제외)	○											○	PJT11				
9.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	WIR1			
10. ~ 13. <삭 제>																	
14. 단말기기류	가. 전화기(헤드셋 전화기 포함)	○		○													
	나. 다기능 전화기 (시계, 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 전화 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		○								○	HU88				
	다.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 기기 (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키넥트,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 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 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		○									○	LIT11	할로겐 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중 15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라. 팩시밀리기기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		○													
	마. 영상전화기	○		○									○	IVT11	안정기 정격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바.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휴모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		○													
	사.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													
	아. 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카드식 포함)	○		○													
	자. 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카드식 포함)	○		○													
	차. 팩시밀리 모뎀(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		○													
카. 근거리데이터채널모뎀(원격통신용, LADC)	○		○														
타.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														
대상기자재	68) 전기분수기	○											○	WPI1			
	69) 투영기 (슬라이드 투영기, 필름스trip 투영기, OHP, 필름 투영기)	○											○	PJT11			
	70) 수도동결방지	○												○	WIR1		
	71)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	BN11		
	72) 전기작동 도어록	○												○	DOR1		
	73) 기타 1)부터 50)까지 이와 유사한 기기	○											○				
	74) 기타 53)부터 72)까지 이와 유사한 기기	○												○	HU88		
	라. 조명기기류 : 9㎓부터 400㎓까지 주파수 대역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구를 가지는 기기 또는 장치	1) 일반 조명기구 (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 전기스텐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											○	LIT11	할로겐 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중 15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2)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자기식안정기, 전자식안정기, 내온변압기, 내온변압기조명기구용 컨버터 (LED전원공급장치 포함)]	○												○	IVT11	안정기 정격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3) 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 포함)	○												○	LIG1	
4) 기타 조명기구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조광기)		○												○	LIT21		

<규제 심사 비대상>

○ 제3조 개정에 따라 관련 대상 기자재를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재분류한 사항으로 규제심사 비대상

○ 기타 조명기구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적합등록으로 완화 및 범위명확화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15. 승강기 (「승강기안전 관리법」에 따른 승강기검사에서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	과.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 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		○								○	TR11				
	하.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		○													
	거.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		○													
	너. 코덱	○		○													
	더. 다기능보조기기(자동차텔레마케팅 다이얼링 방식 기기)	○		○													
	러.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 보호기기	○		○													
	머. 원격제어기기	○	○	○										MO11	정격용량이 10kVA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 등록 대상		
	버.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		○													
	서. 회선장에 감시기기	○		○													
	어. 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ADSL, VDSL 모뎀 등)	○		○													
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한 인터넷전화기, 라우터 등)	○		○									○	SW11				
차.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용 단말장치(케이블모뎀 등)	○		○														
커.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		○														
가. 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나.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다.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및 구성품류 라. 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	15. 승강기 (「승강기안전 관리법」에 따른 승강기검사에서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	가. 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														
		나.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														
		다.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및 구성품류	○														
		라. 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	○														
		1) 텔레비전수상기	○										○				
		2) 영상모니터	○										○				
		3)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										○				
		4) 비디오카메라	○										○				
		5) 튜너	○										○				
6) 편집기	○										○						
7) 디스크플레이어	○										○						
8) 라디오수신기	○										○		RAD11				
9) 앰프(앰프내장 형스피커 포함)	○										○		AMP11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규제 심사 비대상>
 ○ 제3조 개정에 따라 관련 대상 기자재를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재분류한 사항으로 규제심사 비대상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대상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16. 소방기기류	1) 누전경보기(수신부)	○								○		ALD11
	2) 가스누설경보기									○		
	3) 수신기									○		
	4) 중계기									○		
	5) 감지기									○		
	6) 주거용주방 자동소화장치									○		
	7)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8) 가스·분말식 자동소화장치									○		
	9) 고체애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11)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12) 자동차압·과압조절형램퍼									○		
	13) 자동폐쇄장치									○		
	14) 캐비닛형간이스프링쿨러설비									○		
	15) 플램램퍼									○		
	16) 유도등									○		
	17) 비상조명등									○		
	18) 기타 소방기기류									○		
17. 전원공급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 착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은 제외)	○											
18. 전기자전거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정의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그 밖에 이동수단용전동기기는 제4호 다목으로 분류)	○											
19. 그밖에 제1호부터 제15호에 준하는 기기류	○											
※ 비 고												
1. 제7호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00MHz 이하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10) 리시버	○									○	ALD11
	11) 음성기록계	○									○	
	12) 음성플레이어	○									○	
	13) 오디오시스템	○									○	
	14) 전자악기	○									○	
	15) 위성방송수신기	○									○	
	16) 비디오게임기구	○									○	
	17) 비디오폰	○									○	
	18) TV영상프로젝터	○									○	
	19) 음질조절기 (아날라이저 포함)	○									○	
	20) 오디오프로세서	○									○	
	21) 신호변환장치 (AD/DA)	○									○	
	22) 음성 및 영상 분배기	○									○	
	23) 컴프레서 게이트	○									○	
	24) 전자시계	○									○	
	25) CCTV 카메라	○									○	
	26) 영상전송기	○									○	
	27)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	
28) 영상기록계	○									○		
29) AV 신호수신기	○									○		
30) 영상프로세서	○									○		
31)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		
32) 턴테이블	○									○		
33) 컴퓨터류	○									○	MC11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p>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p> <p>나.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p> <p>다. USB 또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p> <p>라.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p> <p>마. 카메라 렌즈</p> <p>바.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p> <p>사.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p> <p>2. 제4호 또는 제7호의 기자재 중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가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p> <p>3. 제4호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p> <p>4. 제5호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만 있는 LED 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p>		34) 컴퓨터 주변기기류 [입력장치(스캐너, 키보드 등), 출력장치(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 외장형 저장장치, 콘트롤러 및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	○							○	IMA		
		35)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직류전원장치, 콘트롤러류,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								○	IMI	
		36) 기타 정보기기류	○								○	IMI61	
		37) 사무기기류 (코팅기, 지폐계수기, 전자자율, 금전등록기, 어학실습기, 문서세단기, 천공기, 재단기, 재분기, 전자철판 및 보드 동전계수기, 전동타자기, 전기소자기, 교통카드 충전기, 번호표 발행기 및 기타 사무기기류)	○								○	IMO	
		38) 휴대용 자동차 진단기	○								○	MEAZ	
		39) 측정·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측설비 등의 기자재류 (제2조제1항 제6호의 정보기기 정의를 포함하는 것에 한함)	○								○	MEAI	

현 행 개 정 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별표 3]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3항 관련)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 보호 SAR	전자파 강도
1.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가. 시험·측정용 계측설비류 (오실로스코프, 전계강도측정기, 스펙트럼 분석기, 네트워크분석기 등으로 제2조제1항 제6호의 정보기기 정의를 포함하는 것에 한함)	○				
	나. 휴대용 자동차진단기	○				
2.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산업용”이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 공정 및 빌딩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가. 산업용컴퓨터	○				
	나. 산업용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산업용 설비	○				
	다. 기타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				
3.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류	가. 전자식 운행기록계	○				
	나. 주차차단 제어장치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 보호		적합등록 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40) 디지털 장치류 : 제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기기	○						○		IMDD		
41) 기타 이와 유사한 멀티미디어 기기류	○						○		AVE99		
차. 승강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검사에서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	1) 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						○		ELV11	
	2)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						○		ELV21	
	3)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및 구성품류	○						○		ELV31	
	4) 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	○						○		ELV41	
카. 소방용품 기기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대상 기기에 한함)	1) 누전정보기(수신부)	○						○		FIR1	
	2) 가스누설경보기	○						○		FIR2	
	3) 수신기	○						○		FIR3	
	4) 중계기	○						○		FIR4	
	5) 감지기	○						○		FIR5	
	6)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		FIR6	
	7)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		FIR7	
	8) 가스·분말식 자동소화장치	○						○		FIR8	
	9) 교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						○		FIR9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		FIR10	
	11)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		FIR11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4. 망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재류	가. 유선통신단말 및 방송 공동 수신 설비	1) 접속 커넥터			○						○		FIR12			
		2) 분기기			○						○		FIR13			
		3) 분배기			○						○		FIR14			
		4) 동축케이블			○						○		FIR15			
		5) 보호기			○						○		FIR16			
		6) 가입자보호기(CATV)			○						○		FIR17			
		7) 광분배기			○						○		FIR18			
		8) 광케이블			○						○					
		9) 직렬단자			○						○					
		나. 유선통신 시스템 부속물류	1)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장치	○		○						○		BIC		
2)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			○						○		PWR1				
	다. 단말 기기류	1) 공중전화기	○		○											
		2) ISDN 망종단기기 (NTE)	○		○											
		3) ISDN 단말기기 (ISDN 전화기, 터미널 어댑터, 안테나스카프 등)	○		○							○	IND			
		4) ISDN 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N 복합단말기기, G4 팩시밀리, ISDN 라우터 등)	○		○											
	5. 전기철도기기류 :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 장치 등 전기철도 차량 내 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그 밖의 고정전원 시설		○													
	6.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													
	대상기자재	12) 자동차암 과압 조절형댐퍼	○									○		FIR12		
13) 자동폐쇄장치			○										○		FIR13	
			14)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쿨러설비	○									○		FIR14	
				15) 플램댐퍼	○									○		FIR15
			16) 유도등		○									○		FIR16
				17) 비상조명등	○									○		FIR17
			18) 기타 소방기기류		○									○		FIR18
				타. 전기자전거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정의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그 밖에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다목 52) 로 분류)		○									○	
		파. 전원공급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법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은 대상에서 제외)		○									○		PWR1	
		하. 기타 기기류	1) 가목, 다목, 라목, 사목, 아목, 자목, 파목의 기자재 중 산업용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과정 및 빌딩제어 등)으로 사용되는 기기류	○										○	IND	
	2)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류 (주차차단장치)		○										○	LIM2		
	3) 절연변압기 (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		○										○	AVR1		

<규제 심사 비대상>

○ 산업용의 범위를 명확화한 것으로 규제심사 비대상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7.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	가. 전기가열기기	1) 납땜인두	○																		
		2) 납땜제거인두																			
		3) 권총형납땜기																			
		4) 열가소성도관용접기																			
		5) 필름접착기																			
		6) 플라스틱절단기																			
		7) 배인트제거기																			
		8) 가열총																			
		9) 전기조각기																			
	나.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1) 관상어용 식물용 히터	○																		
		2) 동물부화 시육용 히터																			
		3)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4) 관상용 전기어항																			
	다. 기포발생기기		○																		
	라. 전격살충기 (기계가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																		
	마. 전기분무기		○																		
	바. 전기소독기	사. 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1) 물수건포장기																			
	2) 물수건마는기기																				
	아. 과일껍질칼기		○																		
자. 감자탈피기		○																			
차. 전기정미기		○																			
대상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4) 고전압 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										○	HVT11							
5) 전기용품 보호용 부속기기(케이블릴, 누전차단기)			○										○	CELL1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에 준하는 기기로서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			○										○	EXP11							
너. 그 밖에 특수조건외 기자재 등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										○	REC							
더. 다목, 라목 또는 자목 40)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UBD							
※ 비 고 1. 다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W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자기시험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2. 다목, 라목 또는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자목 40)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나.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다. 카메라 렌즈 라.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마.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																					

<규제 심사 비대상>

○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를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규제심사 비대상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대상 기자재	카. 전기빵자르개	○																
	타. 에완동물 목욕기	○																
	파. 전기주류숙성기	○																
	하. 전기사계	○																
	거. 컴프레서	○																
	너. 전기분수기	○																
	더. 투영기	1) 슬라이드 투영기	○															
		2) 필름스트립 투영기																
		3) OHP																
		4) 필름 투영기																
	러. 수도동결방지	○																
	머. 세척 및 콩나물 재배기	○																
	버. 전기작동도어록	○																
	서.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																
8.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	가. 전자식스위치 <단서 삭제>	○																
	나. 리모트콘트롤스위치																	
	다. 시간지연스위치																	
	라. 조광기																	
	마. 전자개폐기 <단서 삭제>																	
	바. 온도조절기 (전자식에 한함)																	
	사. 타이머 및 타이머스위치 (전자식에 한함)																	
	아.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9.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케이블릴	○																
10.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누전차단기	○																
11. 절연변압기	가.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1) 전압조정기	○															
		2) 가정용소형변압기																
		3) 교류어댑터																
	나. 전기용접기	1) 전기용접기	○															
2) 총형아크접착기																		

4. 더목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나.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기사계

다.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라.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

마. 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만 있는 LED 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5. 더목에 해당하는 전자파적합성 시험규격은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또는 '조명기기류'를 적용한다.

6.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모델)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

라.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강도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전자파 강도		
12. 기타 다음 각 호의 기자재							
가. 제1호부터 제11호에 준하는 기자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나. 별표 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자재 중 단서규정(정격입력, 출력전압, 정격용량, 소비전력, 정격전류 등) 이외의 기자재 및 특수조건 기자재							
다. 별표 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비 고							
○ 제1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 시험규격은 '가정용 전기기 및 전동기기류' 또는 '형광등 등 및 조명기기류'를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p>[별표 2] <u>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제3조제2항관련)</u></p> <p>[별표 3] <u>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제3조제3항 관련)</u></p> <p>[별표 4] <생략></p> <p>[별표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p> <p>1. <생략></p> <p>2. 표시방법</p> <p>가.~다. <생략></p> <p>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별표 2] <삭제></p> <p>[별표 3] <삭제></p> <p>[별표 4] <현행과 같음></p> <p>[별표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2. 표시방법</p> <p>가.~다. <현행과 같음></p> <p>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규제 심사 비대상></p> <p>○ 제3조의 개정에 따라 별표 2, 3을 삭제, 규제심사 비대상</p>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p>6)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에 따른 병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p>차. 적합성평가를 받은 <u>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u></p> <p>[별표 6] <생략></p>	<p>6)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p>차. 적합성평가를 받은 <u>무선 송·수신용 부품,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를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완제품상에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u></p> <p>[별표 6] <현행과 같음></p>	<p>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p> <p><규제 심사 비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행수입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수입자로 확대 추진 <p><규제 심사 비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팩스모듈, 완구용 모터를 장착한 완제품에 대해서는 <u>추가 시험없이</u>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신, 선택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경우에 해당 사항을 완제품에서 확인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한 내용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p>[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u>기기부호</u> 및 <u>형식기호</u> 표시방법(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p> <p>1. <u>제5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u></p> <p>2. <u>제8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u></p>	<p>[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u>형식기호</u> <u>표시방법</u>(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p> <p><삭제></p> <p><삭제></p>	<p><규제 심사 비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 규제심사 비대상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p>3. 형식기호 표시방법</p> <p>가. 형식에 관한 기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형식기호</th> </tr> </thead> <tbody> <tr> <td>1. 기자재</td> <td>별표1 제1호부터 제45호, 제51호부터 제54호와 별표2 제9호의 대상기자재</td> <td></td> </tr> <tr> <td colspan="3">2. ~ 4. <생략></td> </tr> <tr> <td rowspan="5">5. 방식</td> <td>가. ~ 타. <생략></td> <td></td> </tr> <tr> <td>파.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td> <td>1) 아날로그 방식 2) 디지털방식</td> <td>A D</td> </tr> <tr> <td>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td> <td>1) 동기식 2) 비동기식</td> <td>S AS</td> </tr> <tr> <td>거. <생략></td> <td></td> <td></td> </tr> <tr> <td>6. 주파수</td> <td>제3조제1항 [별표1] 해당 기자재 및 제3조제2항 [별표2] 미약전계 강도 무선기기</td> <td>1) <생략> 2) <생략></td> </tr> <tr> <td colspan="3">7. ~ 10. <생략></td> </tr> <tr> <td colspan="3"> <비고> 1. <생략> 2. 별표1 해당기자재 및 별표2제9호 기자재와 용도사이에는 “-”을 삽입한다. 3. ~ 4. <생략>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형식기호	1. 기자재	별표1 제1호부터 제45호, 제51호부터 제54호와 별표2 제9호의 대상기자재		2. ~ 4. <생략>			5. 방식	가. ~ 타. <생략>		파.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1) 아날로그 방식 2) 디지털방식	A D	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동기식 2) 비동기식	S AS	거. <생략>			6. 주파수	제3조제1항 [별표1] 해당 기자재 및 제3조제2항 [별표2] 미약전계 강도 무선기기	1) <생략> 2) <생략>	7. ~ 10. <생략>			<비고> 1. <생략> 2. 별표1 해당기자재 및 별표2제9호 기자재와 용도사이에는 “-”을 삽입한다. 3. ~ 4. <생략>			<p><삭제></p> <p>1. 형식에 관한 기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형식기호</th> </tr> </thead> <tbody> <tr> <td>1. 기자재</td> <td>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td> <td></td> </tr> <tr> <td colspan="3">2. ~ 4. <생략></td> </tr> <tr> <td rowspan="5">5. 방식</td> <td>가. ~ 타. <생략></td> <td></td> </tr> <tr> <td>파.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td> <td>1) 아날로그 방식 2) 디지털방식</td> <td>A D</td> </tr> <tr> <td>하.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td> <td>1) 동기식 2) 비동기식</td> <td>S AS</td> </tr> <tr> <td>거. <생략></td> <td></td> <td></td> </tr> <tr> <td>6. 주파수</td> <td>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td> <td>1) <생략> 2) <생략></td> </tr> <tr> <td colspan="3">7. ~ 10. <생략></td> </tr> <tr> <td colspan="3"> <비고> 1. <생략> 2. 별표1 해당기자재와 용도사이에는 “—”을 삽입한다. 3. ~ 4. <생략>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형식기호	1. 기자재	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		2. ~ 4. <생략>			5. 방식	가. ~ 타. <생략>		파.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아날로그 방식 2) 디지털방식	A D	하.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동기식 2) 비동기식	S AS	거. <생략>			6. 주파수	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	1) <생략> 2) <생략>	7. ~ 10. <생략>			<비고> 1. <생략> 2. 별표1 해당기자재와 용도사이에는 “—”을 삽입한다. 3. ~ 4. <생략>			<p><규제 심사 비대상></p> <p>○ 제3조 개정에 따라 관련 대상기자재를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재분류</p>
구분	내용	형식기호																																																												
1. 기자재	별표1 제1호부터 제45호, 제51호부터 제54호와 별표2 제9호의 대상기자재																																																													
2. ~ 4. <생략>																																																														
5. 방식	가. ~ 타. <생략>																																																													
	파.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1) 아날로그 방식 2) 디지털방식	A D																																																											
	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동기식 2) 비동기식	S AS																																																											
	거. <생략>																																																													
	6. 주파수	제3조제1항 [별표1] 해당 기자재 및 제3조제2항 [별표2] 미약전계 강도 무선기기	1) <생략> 2) <생략>																																																											
7. ~ 10. <생략>																																																														
<비고> 1. <생략> 2. 별표1 해당기자재 및 별표2제9호 기자재와 용도사이에는 “-”을 삽입한다. 3. ~ 4. <생략>																																																														
구분	내용	형식기호																																																												
1. 기자재	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																																																													
2. ~ 4. <생략>																																																														
5. 방식	가. ~ 타. <생략>																																																													
	파.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아날로그 방식 2) 디지털방식	A D																																																											
	하.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동기식 2) 비동기식	S AS																																																											
	거. <생략>																																																													
	6. 주파수	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	1) <생략> 2) <생략>																																																											
7. ~ 10. <생략>																																																														
<비고> 1. <생략> 2. 별표1 해당기자재와 용도사이에는 “—”을 삽입한다. 3. ~ 4. <생략>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나.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규제 심사 비대상> ○ 제3조 개정에 따라 관련 대상기자재를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재분류					
구분	항목	기 자 재	용 도	사 용 경 계	합 격 자 식	방 식	주 파 수	송· 수 신 의 구 별	전 력	전 파 형 식	체 널	구분	항목	기 자 재	용 도	사 용 경 계	합 격 자 식	방 식	주 파 수		송· 수 신 의 구 별	전 력	전 파 형 식	체 널	
1.	무선전화정보자동수신기	○	○	○	○	○						1.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	○	○	○	○							
2.	무선방위 측정기	○	○	○	○	○						2.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	○	○	○								
3.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3.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	○	○								
4.	경보자동전화장치	○	○	○	○	○						4.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수신장치의 기기	○	○	○	○		○	○	○	○	○	○	
5.	단측파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	○	○	○		○	○	○	○	○	5.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수신장치의 기기	○	○	○	○		○	○	○	○	○	○	
6.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	○	○	○		○		○	○		6.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수신장치의 기기	○	○	○	○		○	○	○	○	○	○	
7.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	○		○	○	○	○	○	7.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 의 기기	○	○	○	○	○			○				
8.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 선설비	○	○	○	○		○	○	○	○	○	8.	네비텍스수신기	○	○	○	○								
9.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	○		○	○	○	○	○	9.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의 기기	○	○	○	○	○	○		○				
10.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	○	○	○	○						10.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	○		○	○	○	○	○	○	
11.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	○	○							11.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 선설비의 기기	○	○	○	○		○	○	○	○	○	○	
12.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수신장치의 기기	○	○	○	○		○	○	○	○	○	12.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	○		○	○	○	○	○	○	
13.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수신장치의 기기	○	○	○	○		○	○		○	○	13.	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용의 기기)	○	○	○	○		○	○	○	○	○	○	
												14.	경보자동전화장치	○	○	○	○	○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구분	항목	기	용	사	합	방	주	송	전	전	채	구분	항목	기	용	사	합	방	주	송	전	전	채																																																				
		자	도	용	격	자	식	수	·	신	의			구	별	력	식	년	자	도	용	격	자			식	수	·	신	의	구	별	력	식	년																																								
14.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수신장치의 기기		○	○	○	○			○	○	○	○	15.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	○	○	○	○																																																									
		○	○	○	○										16.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	○	○	○			○				○	○																																															
		○	○	○	○												17. 무선방위 측정기		○	○	○	○	○																																																				
		○	○	○	○														18. 라디오부이의 기기		○	○	○	○			○	○					○			○																																							
		○	○	○	○	○				○											19.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	○	○																		20.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	○	○	○																						21. 중단파대, 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링크 장치		○			○	○			○					○			○	○			○	○																										
		○	○	○	○																								2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	○	○	○	○				○																							23.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	○	○	○																															24.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	○	○	○	○																																			25.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			○	○			○					○			○	○			○	○										
		○	○	○	○	○																																							26. 기상원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	○	○																																												27.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					○			○	○		
		○	○	○	○																																																28.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					○		
○	○	○	○	○							29.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	○	○	○									30.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	○	○	○	○											31.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	○	○	○	○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구분	항목	기	용	사	합	방	주	송·	전	전	채	구분	항목	기	용	사	합	방	주	송·	전	전	채		
		자	도	용	격	자	파	수신	파	파				형	자	도	용	격	자	파	수신	파			파
	27.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 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3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28. 900MHz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3.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29.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	○	○	○	○	○	○	○	○	○		34.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30.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5.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 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	○		
	31.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6.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 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32.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 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	○		
	33.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8.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 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34.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9.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5.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GHz)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 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36.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GHz)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 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37.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2.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8.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3.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39.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		44.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0.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	○			○	○		○														
	41. 특정소출력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 채널 및 전력 표시 생략)	○	○	○	○			○	○	○	○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구분	항목	기 자 재	용 도 경	사 용 환 경	합 격 자 식	방 파 수	주 · 수 신 의 구 별	전 파 력	전 파 형 식	체 널	구분	항목	기 자 재	용 도 경	사 용 환 경	합 격 자 식	방 파 수	주 · 수 신 의 구 별	전 파 력	전 파 형 식	체 널		
																							42. RFID/USN용 무선설비의 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
43.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	○	○	○		○	○				46.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4.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	○	○	○		○	○	○			47.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5.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8.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6.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9.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	
47.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		50.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	○		○	○		○			
48. UWB 및 용도미지정 기기	○	○	○	○		○	○	○			51.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	○	○		○	○		○			
49.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 채널 및 전력 표시 생략)	○	○	○	○		○	○	○	○	○	○	
5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	○	○		○	○	○	○		53. RFID용 무선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	○	○	○	○		○	○	○	○	○	○	
51.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	○	○		○	○	○	○		54. USN용 무선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	○	○	○	○		○	○	○	○	○	○	
52.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	○	○		○	○		○		55. 코드없는 전화기	○	○	○	○		○	○	○	○	○	○	
53.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	○	○	○		○	○	○	○	○	56.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	○	○		○	○	○				
54.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57.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	○	○	○		○	○	○				
55.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	○	○	○		○	○	○			58.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	○	○	○		○	○					
											59.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	○	○	○		○	○	○				
											60.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	
											61.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	○	○	○		○	○	○				
											62.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		○		○				
											63.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p>[별지 제5호 서식] 뒤 쪽 (적합등록 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p> <p>1. ~ 5. (생략)</p> <p>6. 회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유선분야 기자재인 경우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합니다. <p>[별지 제6호 서식] 뒤 쪽(구비서류 작성방법)</p> <p>1. ~ 6. (생략)</p>	<p>[별지 제5호 서식] 뒤 쪽 (적합등록 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p> <p>2. ~ 5. (현행과 같음)</p> <p>6. 회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및 <u>“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u>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유선분야 기자재인 경우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보관합니다. <p>[별지 제6호 서식] 뒤 쪽(구비서류 작성방법)</p> <p>1. ~ 6. (생략)</p>	<p><규제 심사 비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서식에 반영한 내용으로 규제심사 비대상

현행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p>7. 기기부호(형식기호)</p> <p>- “<u>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u>”을 참고합니다.</p> <p>8. ~ 16. (생략)</p>	<p>7. 기기부호(형식기호)</p> <p>- <u>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및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u>을 참고합니다.</p> <p>8. ~ 16. (생략)</p>	<p>○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 규제심사 비대상</p>